

2020 - 480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62호(2016.11.10.)로 결정·고시된 구로구 고척동 57-9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구로구 고척동 57-9번지 일대	17,052.0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11.20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구로구 주택과(☎02-860-2940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0 - 481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89호(2017.3.16.)로 결장·고시된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	36,473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11.24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